**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정관 개정 신구대조표

| 개정 전 | 개정 후 |
|---|---|
| 1.1 용어의 정의<br><br>**상장규정 (Listing Rules):** 지정거래소에서의 주식 상장 및 동 주식의 예탁을 규율하는 관련 법규, 규정 | 1.1 용어의 정의<br><br>**상장규정 (Listing Rules):** 지정거래소에서의 주식 상장 및 동 주식의 전자등록을 규율하는 관련 법규, 규정 |
| **실질주주 (Beneficial Owner):** 실질지분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 및 2인 이상의 자가 실질지분의 공동보유자로서 등록된 경우, 문맥에 따라서 공동보유자 중 1인 또는 그러한 자 전원으로서 실질주주명부에 처음으로 이름이 등재된 자를 의미한다. | [삭제] |
| **실질주주명부 (Register of Beneficial Interest):** 본 정관에서 지칭하는 실질지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각 실질주주를 등재한 명부 | [삭제] |
| **실질지분 (Beneficial Interest):** 회사 등록주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익할 수 있는 수익지분(혹은 그와 같은 지분적 권리) | [삭제] |
| 없음 | **전자등록 (Electronic Registration):**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없음 | **전자등록계좌부 (Electronic Registration Book):**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전자증권법상의 장부를 의미한다 |
| 없음 | **전자등록기관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ion):** 전자증권법(이하 정의)에서 정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전자증권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예탁원을 의미함 |
| 없음 | **전자증권법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Etc.):** 한국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 8.1 주주가 주권을 요구하지 않는 한, 회사는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주권에는 그 주권 발행을 요구하 | 8.1 주주가 주권을 요구하지 않는 한, 회사는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주권에는 그 주권 발행을 요구하 |

| | |
|---|---|
| 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특정하여 회사 인감을 날인한 후 이사회로부터 서명할 권한을 위임 받은 이사가 서명하여야 하되, 이사 또는 임원의 서명, 날인은 fax에 의할 수 있다.<br><br>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정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주권은 상장규정과 지정거래소와 연계된 예탁원의 관행을 준수하여 발행 되어야 한다.<br><br>회사의 주권은 상장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을 표창하는 8종으로 한다. | 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특정하여 회사 인감을 날인한 후 이사회로부터 서명할 권한을 위임 받은 이사가 서명하여야 하되, 이사 또는 임원의 서명, 날인은 fax에 의할 수 있다.<br><br>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정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회사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지정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 8.4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지정거래소에 연계된 예탁원에 대하여 멸실, 분실 또는 도난을 이유로 주권의 재발행 또는 갱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멸실, 분실 또는 도난에 관한 소명자료 및 면책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관련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거래소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적어도 1 이상의 일간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만일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기타 해당 지역의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절차가 만일 있다면 그 절차를 경료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청구자에게 주권이 재발행될 수 있다. | 8.4 [삭제] |
| 8.5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위 제8.3조 내지 제8.4조가 준수된 이상, 예탁원은 (1)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주권의 재발행이나, (2) 관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주권의 재발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청구,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8.5 [삭제] |
| 8.8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탁원을 통하여 발행된 회사의 주권의 기재사항은 영어 및 지정거래소에서 사용되는 공식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8.8 [삭제] |
| **10. 주주명부; 실질주주명부** | **10. 주주명부** |

| | |
|---|---|
| 10.3 제10.1조 및 제10.2조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탁원은 주주명부 이외에 1개 이상의 실질주주명부를 이사회가 지정하는 케이먼 아일랜드 외의 지역에서 작성되도록 할 수 있으며, 만일 그러한 실질주주명부가 작성되는 경우라면, 예탁원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3 [삭제] |
| 10.3 제10.1조 및 제10.2조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탁원은 주주명부 이외에 1개 이상의 실질주주명부를 이사회가 지정하는 케이먼 아일랜드 외의 지역에서 작성되도록 할 수 있으며, 만일 그러한 실질주주명부가 작성되는 경우라면, 예탁원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br><br>(a) 각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가 가지는 실질지분의 성격, 주식수, 실질주주가 실질지분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자본계상될 납입액면금<br>(b) 주주명부에 기재된 일시<br>(c) 실질주주가 회사 주식에 대한 실질지분에 관한 권한을 상실한 일시<br><br>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실질주주명부는 예탁원의 일반관행 및 상장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방식으로 그 기재사항이 작성되어야 한다. | 10.3 [삭제] |
| 10.4 회사의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한국 내 비치된 주주명부 및/또는 실질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10.4 회사의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한국 내 비치된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 11.1 회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해당 주식에 있어서 명부에 등재된 주주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기되는 제반 권리주장 또는 그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 주장을 승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위 조항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사의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회사 및 예탁원은 상장규정이 요구하는 경우 실질주주명부에 성명이 기재된 자를 실질주주명부에 등재된 회사주식의 실질지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 인정할 수 있다. | 11.1 회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해당 주식에 있어서 명부에 등재된 주주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기되는 제반 권리주장 또는 그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 주장을 승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 | |
|---|---|
| 12.3 본 조에 기재된 여하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는, 관련법령 및 지정거래소 또는 예탁원의 관행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그 등록을 반대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양도는 지정거래소의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고, 지정거래소가 채택하는 표준절차에 따라 등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12.3 본 조에 기재된 여하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식이 등록된 전자등록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 후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양도된 주식이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되기 전까지 양도인을 당해 주식의 소유자로 본다. |
| 18.4 모든 배당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되어야 한다.<br><br>(a) 정관 제16.7조에 따라 정해지는 해당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성명이 현출, 적법하게 등재된 주주에게 지급하거나; 또는<br>(b) (주주가 그와 같이 지시하거나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법규 또는 지정거래소의 규정에 의해 그와 같이 지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각 회계연도 말에 실질주주명부에 성명이 현출, 적법하게 등재된 각 '실질주주'에게 (실질주주명부에서 규정된 바에 따른 실질지분에 따라) 지급 | 18.4 모든 배당금은 정관 제16.7조에 따라 정해지는 해당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성명이 현출, 적법하게 등재된 주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 24.1 이사회는 기준일 현재 다음과 같이 등재된 자에게 적어도 2주간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br><br>(a)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된 자 또는<br>(b)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서 등재된 자<br><br>통지에서는 소집장소, 목적사항 및 일시를 특정하여야 하며, 특별거래에 관한 안건(특별이해관계자 거래 승인 안건을 의미: 역주)의 경우에는 결의 대상인 당해 거래의 성질 및 당해 특별거래에 있어서의 제한과 효과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안건의 경우에는 후보의 경력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주총회가 본 정관 또는 관련법률에서 특정된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 소집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권한이 있는 주주 전원의 | 24.1 이사회는 기준일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적어도 2주간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br><br>통지에서는 소집장소, 목적사항 및 일시를 특정하여야 하며, 특별거래에 관한 안건(특별이해관계자 거래 승인 안건을 의미: 역주)의 경우에는 결의 대상인 당해 거래의 성질 및 당해 특별거래에 있어서의 제한과 효과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안건의 경우에는 후보의 경력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주총회가 본 정관 또는 관련법률에서 특정된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 소집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권한이 있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적법하게 소집된 것으로 본다. |

| | |
|---|---|
|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적법하게 소집된 것으로 본다. | |
| 25.1 주주의 경우 통지는 주주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지정된 주소로 발송됨으로써 이루어지며, 실질주주의 경우 통지는 실질주주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지정된 주소로 발송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24조 및 본 조와 관련하여, 우편, 배송서비스(courier),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기타 상장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바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는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특정하여야 하고, 특별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소집통지의 경우에는 특별결의를 통하여 결의하고자 하는 목적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 | 25.1 주주의 경우 통지는 주주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지정된 주소로 발송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24조 및 본 조와 관련하여, 우편, 배송서비스(courier),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기타 상장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바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는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특정하여야 하고, 특별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소집통지의 경우에는 특별결의를 통하여 결의하고자 하는 목적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 |
| 34.1 위 33조에 의한 법인의 권한에 별도의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탁원이 회사의 주주(또는 실질주주의 명부상 명의인[nominee])인 경우에는, 예탁원이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자신을 위한 의결권대리행사자로 지명하여 제반 주주총회에 참석 의결하게 할 수 있다. 만일 그와 같이 지정되는 자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 예탁원의 위임장에는 어느 종류의 어느 수량의 주식에 대하여 각 의결권대리행사인을 지정한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와 같이 예탁원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예탁원을 위하여, 마치 자신이 회사의 자연인 주주인 경우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수의 경우에도 의결권을 분리 행사할 수 있다. | 25.1 위 33조에 의한 법인의 권한에 별도의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사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예탁원은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이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주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원이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자신을 위한 의결권대리행사자로 지명하여 제반 주주총회에 참석 의결하게 할 수 있다. 만일 그와 같이 지정되는 자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 예탁원의 위임장에는 어느 종류의 어느 수량의 주식에 대하여 각 의결권대리행사인을 지정한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와 같이 예탁원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예탁원을 위하여, 마치 자신이 회사의 자연인 주주인 경우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수의 경우에도 의결권을 분리 행사할 수 있다. |
| 34.2 앞서 말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 주식이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예탁원은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이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실질주주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는 상장규정과 예탁원의 규정 및 지정거래소에서의 통상적인 관행에 의한다. | 34.2 [삭제] |